

1. 축사 전기안전 강화

< 사업목적 >

- 기상이변으로 인한 낙뢰 증가되고, 축사 낙뢰피해시 전력계통 고장발생
- 정전시 환기장치 미작동으로 가축 질식사 위험성 증가
 - ▶ 낙뢰피해 방지시스템, 비상발전기, 전기 안전점검으로 피해 예방

□ 관련근거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 「경기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지원비율(%):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 도비 및 시군비는 차등보조
- 지원내용 : 농장 상황에 맞는 정전 예방대책 지원

□ 주요내용

- 낙뢰 및 정전 피해는 보험제도가 없어 농가별 예방대책 지원
 - 지원단가
 - 낙뢰피해 방지시스템 : 1,000천원/대
 - 축사 비상발전기 : 30,000천원/개소(전기인입·증설비용 포함)
 - 축사전기안전 진단 지원 : 개소당 3,000천원 한도
 - 사업대상자 선정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우선순위 : 1순위 가축행복농장 인증농장, 2순위 건축물대장 등재축사, 3순위 시군 자체기준
 - 지원제외 : 무허가 축사 및 축산법·가축분뇨법 등 위반농가
- < 축사 비상발전기 설치축사전기안전 진단 지원 > : 전업규모 이상의 양계·양돈농가 우선 지원

○ 지원조건

< 공 통 >

- 전기공사시 전기공사업 면허보유 등록업체와 계약하여 설치
- 장비 규격화 및 품질보증을 위해 공인제품 구입·설치
- 장비 AS를 위해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 보증보험 가입하고 최소 보험기간 1년 이상일 것

< 축사 비상발전기 설치 > 비상발전기 엔진제작 증명서 필수

< 낙뢰피해 방지시스템 구축 >/ 접지(접지보강)공사 병행시행

- Line 200kA(*N-PE 100kA) (Total : I_{max}700kA)이상 규격의 보호용량 제품
※ KS 제품 (Class 1) 총 보호용량 : Line 200KA (Total : I_{max} 800KA)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규격의 제품

< 축사전기안전 진단 지원 >

- 한국전기안전공단 또는 민간기관(업체/전문자격 확인)에 안전진단 의뢰
-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참고 1)를 참고하여 지원한도내 전기설비 규모에 따라 지원(1년 계약)
- 전기안전진단 계약서 및 점검 전기설비규모별 점검 횟수를 반드시 확인(참고 2)

□ 행정사항

○ 비상발전기 또는 낙뢰피해방지시스템에서 축사전기안전진단으로 사업 변경시 도 사업변경 승인 필요

○ 사후관리

- 제품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에 한 사전교육실시(설치업체)
- 보조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수령하였을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보조금 회수 조치
- 비상발전기는 철판(스테인레스) 등으로 안내판 제작 후 제품 등 잘 보이는 곳에 부착

2025년 경기도와 00시(군) 지원 사업비 000천원(도비000, 시비000, 자담000)	
형 식 명(규격)	축사 비상발전기(000KW)
모델명(제조번호)	XX-000
제조업체(공급업체)	제조업체명/ 생산국가명(주소) 국내 공급업체명

참고 1

2025년 전기안전관리 대행 월 수수료(한국전기안전공사)

(단위:원/VAT별도)

구 분		수 수 료	비 고
저압	50kW이하	94,900	○ 부가가치세 별도 ○ 수수료 중복할인 적용안됨 (자동이체 제외)
	50kW초과 ~ 100kW이하	108,500	
	100kW초과 ~ 200kW이하	123,700	
	200kW초과 ~ 300kW이하	141,500	
	300kW초과 ~ 400kW이하	216,100	
	400kW초과	259,200	
고압	100kW이하	134,100	1. 선납수용가 할인
	100kW초과 ~ 200kW이하	166,100	○ 3개월 이상 : 2%
	200kW초과 ~ 300kW이하	184,300	○ 6개월 이상 : 3%
	300kW초과 ~ 400kW이하	269,800	○ 12개월 이상 : 5%
	400kW초과 ~ 500kW이하	319,200	2. 장기계약 고객 할인
	500kW초과 ~ 600kW이하	421,900	○ 15 ~ 19년 : 3%
	600kW초과 ~ 700kW이하	542,900	○ 20 ~ 24년 : 4%
	700kW초과 ~ 800kW이하	656,300	○ 25년 이상 : 5%
	800kW초과 ~ 900kW이하	814,200	3. 다수계약 고객 할인
	900kW초과 ~ 1,000kW이하	945,200	○ 10 ~ 19건 : 3%
	1,000kW초과 ~ 1,250kW이하	1,236,400	○ 20 ~ 29건 : 4%
	1,250kW초과 ~ 1,500kW이하	1,487,600	○ 30건 이상 : 5%
	1,500kW초과 ~ 2,000kW이하	2,032,400	4. 자동이체 고객 1% 할인
	2,000kW초과 ~ 2,500kW미만	2,705,900	
	2,500kW초과 ~ 3,500kW까지	3,096,900	
	3,500kW초과 ~ 4,500kW까지	3,716,300	

참고 1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제44조의2 제2항 관련)

2. 전기설비규모별 개소당 가중치

전기설비 규모		대행범위(개소)		개소당 가중치(점)		점검횟수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개인 대행자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개인 대행자	
저 압	용량 50킬로와트 이하	85	60	0.7	1.0	매월 1회 이상
	용량 50킬로와트 초과 100킬로와트 이하	75	46	0.8	1.3	
	용량 100킬로와트 초과 200킬로와트 이하	66	40	0.9	1.5	
	용량 200킬로와트 초과 300킬로와트 이하	60	35	1.0	1.7	
	용량 300킬로와트 초과 400킬로와트 이하	40	23	1.5	2.6	매월 2회 이상
	용량 400킬로와트 초과	33	20	1.8	3.0	
고 압 및 특 고 압	용량 100킬로와트 이하	60	35	1.0	1.7	매월 1회 이상
	용량 100킬로와트 초과 200킬로와트 이하	50	30	1.2	2.0	
	용량 200킬로와트 초과 300킬로와트 이하	46	27	1.3	2.2	
	용량 300킬로와트 초과 400킬로와트 이하	30	17	2.0	3.4	매월 2회 이상
	용량 400킬로와트 초과 500킬로와트 이하	25	15	2.4	4.0	
	용량 500킬로와트 초과 600킬로와트 이하	20	12	3.0	5.0	매월 3회 이상
	용량 600킬로와트 초과 700킬로와트 이하	15	10	4.0	6.0	
	용량 700킬로와트 초과 800킬로와트 이하	12	8	5.0	7.5	매월 4회 이상
	용량 800킬로와트 초과 900킬로와트 이하	10	8	6.0	7.5	
	용량 900킬로와트 초과 1,000킬로와트 이하	8	8	7.5	7.5	
	용량 1,000킬로와트 초과 1,250킬로와트 이하	6	6	10	10	
	용량 1,250킬로와트 초과 1,500킬로와트 이하	5	—	12	—	
	용량 1,500킬로와트 초과 2,000킬로와트 이하	4	—	15	—	매월 5회 이상
	용량 2,000킬로와트 초과 2,500킬로와트 미만	3	—	20	—	매월 6회 이상

비고: 전기설비를 설치 또는 개조 중인 공사의 경우에는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한다.

2. 폭염대비 등 면역증강제 지원

< 사업목적 >

- 2026년 면역증강제 일괄구입 후 5~6월 축산농가에 공급, 7~8월 폭염 시작 전 가축의 면역력을 상승시켜 폭염피해 최소화

《연도별 피해 마리수》

"20)19천마리 → '21)78천마리 → '22)103천마리 → '23)77천마리 → '24)175천마리

□ 관련근거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및 시행규칙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대상 농어업재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년 5월 ~ 9월
- 사업량 : 비타민제, 광물질 등 가축 면역증강제 66,670kg
- 사업비 : 666,700천원(도비 200,000, 시군비 466,690)
 - 산출내역 : 10천원 × 66,670kg = 666,700천원
 -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주요내용

- 공급대상
 - 전업농 규모 미만의 양계농가(축산업허가농가) 우선공급
 - ※ 자가소비, 취미 등으로 하는 소규모 농가는 공급 제외
 - 우선공급 후 전년도 폭염 피해농가 등 고온에 취약한 축종에 대하여 사육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급
- 공급시기 : 폭염시작 전 5월~7월 공급완료
- 제품선정 : 제품 선호도 조사 시 선정기준 참고하되, 농가 선호도, 효과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 등록 제품 중 선정

기준항목	검토사항
용도의 적합성	폭염 등 여름철 기온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축면역증강 비타민제, 광물질, 고단백질 첨가제 등
제품의 공신력 및 안전성	사료성분등록 및 동물용의약품 등록제품으로 안전성·유효성 시험을 통과·허가된 제품
제품 인지도 및 선호도	시·군 수요조사에서 제출된 농가희망제품 중 조달청 등록된 제품

3. 이주노동자 주거환경개선

< 사업목적 >

- 축산분야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개선으로 기초생활권 보장 및 복지향상 도모

□ 관련근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기숙사의 제공 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년 1월 ~ 12월
- 사업량 : - 농가
- 사업비 :
 - 주거환경개선: 10,000천원
 - 관리자 신축 : 30,000천원
 -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중 이주노동자(외국인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하고 있는 농가
 - 또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체결이 완료된 농가(외국인 등록증 및 4대보험 가입증서 제출)
 -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시설
- 지원내용
 -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벽체 등 단열보강, 환기시설, 보일러 교체설치, 주방 또는 욕실 리모델링 등(※ 단순 도배장판, 냉난방기 설치는 후순위 지원)
 - 주거공간 분리 지원 : 축사와 주거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관리자 신축 지원